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72

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최보윤·김선교·서명옥

서천호 • 박준태 • 이달희

강승규 · 김상훈 · 최은석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비상임심판 관에 대하여 "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"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"심신장애"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"장애인"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 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,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"심신장애"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"심신장애"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4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0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(비상임심판관) ① ~ ③	제14조(비상임심판관) ① ~ ③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	4		
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
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			
관을 해촉할 수 있다. 이 경우			
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			
승인을 받아야 한다.	,		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	1.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		
수 없게 된 경우	<u>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</u>		
	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		
	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		
	<u>우</u>	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